

#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안.운영및실비변상조례증기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1992. 10. 14

의회 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10. 2일 정환모 의원외 10인 의원 발의

나. 회부 일자 : 1992. 10. 9일 회부

다. 상정 일자 : 제16회 남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운영위원회(1992.10. 14일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정환모 위원)

#### 가. 제안 이유

○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안.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7조(실비변상)  
제1항의 규정에 “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 
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  
결산검사 기간과 회기가 중첩될 경우 일비 지급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이를  
명확히 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 골자

○ 제7조(실비변상) 제1항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“다만,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중에는 이를  
지급하지 아니한다”

### 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이무상)

- 지금까지 시행중인 부산직할시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는 “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 기간중 회기와 중첩될 경우 일비 지급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,
- 본 조례 제7조에 “다만,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 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”라는 회기와 결산검사기간을 구분하는 단서 규정을 별도 포함시켜,
- 실비변상의 집행을 원활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은 예산의 전전 재정 운영의 원칙에 매우 적합하므로 본 개정조례안 지극히 타당 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### 5. 토론 요지 : 없 음

### 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### 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